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
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00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119호, '25.11.11. 일부개정, '26.11.12. 시행)됨에 따라,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호스피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하여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)
- 나. 호스피스 사업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암센터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통계 등 자료 항목을 규정함(안 제12조의2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법 제28조의2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호스피스 대상환자(이하 "호스피스대상환자"라 한다)의 전자의무기록(「의료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(電子醫務記錄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
2.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에 관한 자료
3.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희망하는 호스피스의 유형 및 그 지역에 관한 자료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② 법 제28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호스피스대상 환자의 진료기록부등(「의료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

전자의무기록을 말한다)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③ 법 제28조의2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호스피스대상 환자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신고 자료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에 관한 자료
3. 「암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집·작성한 통계자료
4.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 청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 청구에 관한 자료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호스피스대상환자(이하 "호스피스대상환자"라 한다)의 전자의무기록(「의료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(電子醫務記錄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</u> <u>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</u> <u>2.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에 관한 자료</u> <u>3.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희망하는 호스피스의 유형 및 그 지역에 관한 자료</u> <u>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</u>

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② 법 제28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료기록부등(「의료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을 말한다)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③ 법 제28조의2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호스피스대상환자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신고 자료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

지급 청구 및 같은 조 제2항
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
청구에 관한 자료

3. 「암관리법」 제14조제1항
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의 시
행을 위하여 수집·작성한 통
계자료

4.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제1
항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 청
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
급여비용 심사 청구에 관한
자료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
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
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기 위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료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05